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71
----------	-------

발의연월일 : 2025. 9. 1

발 의 자 : 임태영 · 김재섭 · 김상훈
유상범 · 윤한홍 · 박덕흠
조지연 · 윤재옥 · 이만희
김소희 · 진종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활동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음. 특히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전제로 국민에게 산림경영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산림교육, 휴양 지원, 소득창출 등의 기능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숲경영체험림은 영림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산림을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세제 혜택, 각종 규제 완화 등에서 불합리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숲경영체험림을 임업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숲경영체험림의 제도적 정착을 도모하고 산림의 다기능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임업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법률 제 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을 “자연휴양림, 숲경영체험림, 수목원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자연휴양림</u> ,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1. ----- ----- ----- ----- <u>자</u> <u>연휴양림, 숲경영체험림, 수목원 및</u> ----- ----- ----- -----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